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셋별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83
------	------

발의일자 : 2024. 8. 22.

발 의 자 : 엄셋별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금천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연령기준 수정(안 제3조제1호).

나. 중복 조항 수정(안 제5조).

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9조제5항제4호).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3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4. 8. 23. ~ 8. 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청년정책”으로 한다.

제9조제5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u>청년고용촉진특별법</u>」(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p> <p>2. ~ 5. (생략)</p> <p>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u>는 <u>청년정책</u>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④ (생략)</p> <p>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p>	<p>제3조(용어의 정의) ----- ----- ---.</p> <p>1. “청년”이란 <u>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u>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p> <p>2. ~ 5. (현행 과 같음)</p> <p>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청년정책</u>----- ----- ----- ----- ---.</p> <p>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p>

다.

1. ~ 3. (생략)

<신설>

4.·5. (생략)

⑥ ~ ⑬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청년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⑥ ~ ⑬ (현행과 같음)

# 현행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4. 3. 29.]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65호, 2024. 3.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행복과 권익 증진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행복과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8.>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금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금천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4.3.8.>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1.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3.8.]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례화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② 구청장은 금천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구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1.5.13.>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10조의2(청년참여기구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청년의 구정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청년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참여기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천구 정책에 대한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2. 금천구 내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금천구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③ 청년참여기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8.]

**제10조의3(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청년참여기구는 공동대표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하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년참여기구를 대표하고 공동대표 2명을 두되, 구성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동대표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에 소재한 직장·학교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④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구성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청년참여기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청년참여기구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 참여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간사를 둔다.

⑦ 청년참여기구의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제10조의4(활동경력인증서 발급)** 구청장은 청년참여기구 위원에게 활동경력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8.]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학시험·자격시험 등 응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15.>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구청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8.>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⑥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0.>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9조(청년 시설의 이용)** ① 청년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가 제1항의 이용 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20조(청년 시설의 이용료)** 구청장이나 청년 시설 수탁자는 청년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12.31.]

**제2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중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12.31.>]

**제2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중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12.31.>]

부 칙 (제904호,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72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59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42호, 2023.7.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 12.>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33호, 2024. 5.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3.26., 2020.10.5., 2021.7.20., 2023.5.22., 2023.7.18., 2024.5.20.>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16., 2020.3.26., 2021.7.20.>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차. 청년의 국제협력

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제7조의2(청년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10.5., 2021.7.20., 2024.5.20.>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5.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경제·주택·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021.7.20.>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⑧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10.5.]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1.7.20.>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4.5.20.>

1.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국방·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3. 인사·감사·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성격·구성 등에 비추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④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5.20.>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4.5.20.>

⑥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20.1.0.5., 2021.7.20., 2023.7.18., 2024.5.20.>

⑦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6.1.7., 2021.7.20., 2023.7.18., 2024.5.20.>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 제10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5.20.>
-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부서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및 수집된 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21.7.20.]

[제목개정 2021.12.30.]

제10조의3(청년인재추천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추천할 청년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인재추천위원회(이하 “청년인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인재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1. 청년정책 혹은 인재추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위원회 운영 등의 경험과 민관 거버넌스 경험을 지닌 사람

- 3. 청년들의 관심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7.20.]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⑤ 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제목개정 2020.10.5.]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⑥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3.10.>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2022.3.10.>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2.3.10.>

②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③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0.10.5.]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금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3.10.>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0.10.5.>

1.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2.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③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본조신설 2019.5.16.]

[중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5.16.>]

제19조(청년의 국제협력) 시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6.]

[중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3.26.>]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평가
4.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5.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협력 사업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
7.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8.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9.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8.>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4.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및 대외 협력 사업
5. 생활권 기반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 지원
6.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7.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2023.7.18>

⑤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2023.7.18.>

[제목개정 2020.10.5.]

[제19조에서 이동, 중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3.26.>]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10.8., 2023.12.29.>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8., 2023.5.22.>

1. 서울에서 활동하는 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3.26.>]

제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3.26.>]

제22조의2(청년의 날) 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12.29.>

② 시장은 청년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본조신설 2020.3.26.]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22조에서 이동 <2020.3.26.>]

제24조(표창)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6.]

부칙<제5812호,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와 제13조를 각각 제11조와 제12조로 한다.

제3조(청년허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허브’는 이 조례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제6004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90호,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474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044호,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와 그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

제3조(근로자이사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한 근로자이사는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한 노동자이사로 본다.

제4조(근로복지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별표]의 근로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동복지시설로 본다.

부칙<제7046호,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펼침 부 칙 <제7046호, 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부칙<제7046호,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제7142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25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01호,20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695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64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제8249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53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513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 <제8709호, 2023.5.22.> 부 칙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 <제8709호, 2023.5.22.>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751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813호,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필첨 부 칙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에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65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233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